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2022년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설명서

STCW 협약



해양수산부

본 자료는 우리나라 국적선이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참고자료로 법적·행정적 효력이 없으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집중점검 질문서(영문) 및 각 협약 등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ON STCW
01/09/2022 to 30/11/2022

CIC on STCW			
Inspection Authority			
Ship Name		IMO Number	
Date of Inspection		Inspection Port	

QUESTIONS 1 TO 10 ANSWERED WITH A "NO" MUST BE ACCOMPANIED BY A RELEVANT DEFICIENCY ON THE REPORT OF INSPECTION.

No.	Item	Yes	No	N/A	Detention
Q.1*	Do the number of the seafarers serving on board conform with the Minimum Safe Manning requirement specified for the vessel? (01209 - STCW/CI/R4)	☐	☐	☐	☐
Q.2*	Do the master and officers hold valid certificates of competency as required by the Minimum Safe Manning Document? (01201 01203 - STCW/CI/R2)	☐	☐	☐	☐
Q.3*	Do the master, officers and radio operators hold valid endorsements attesting the recognition of certificates or documentary proof of application? (01214 01215 - STCW/CI/R2.7)	☐	☐	☐	☐
Q.4*	Do seafarers hold relevant certificates of proficiency (COP) or documentary evidences? (Please refer to the Guidelines)	☐	☐	☐	☐
Q.5*	Do seafarers on board hold valid medical certificates? (01218 - STCW/CI/R9)	☐	☐	☐	☐
Q.6	Do the records for hours of rest indicat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01308 - STCW/PA/VIII/1)	☐	☐	☐	
Q.7	Do the watch schedules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STCW? (01306 - STCW/PA/VIII/1.5, STCW/PA/VIII/2)	☐	☐	☐	
Q.8*	Are seafarers newly joined the vessel familiar with their specific duties that are relevant to their routine or emergency duties? (04121 - STCW/PA/CI/14)	☐	☐	☐	☐
Q.9*	Can the seafarers on board the vessel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each other in the working language of the vessel? (10136 - STCW/CI/R14)	☐	☐	☐	☐
Q.10	Do the voyage plans cover the whole route from berth to berth? (10127 - STCW/PA/VIII/2)	☐	☐	☐	

Note: If "No" is ticked for questions marked with an asterisk "*", the ship may be considered for detention.

STCW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CIC) 질문서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 아 · 태지역(T-MOU) 및 유럽지역(P-MOU) 공동실시 -

점 검 청			
선 명		IMO번호	
점검일자		점검항만	

번호	질 문	Yes	No	N/A	Detention
1*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의 수는 해당 선박의 최소승무정원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01209 - STCW/CI/R4)	☐	☐	☐	☐
2*	선장 및 사관들은 최소승무정원증서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해기사면허(COC)를 소지하고 있는가? (01201 01203 - STCW/CI/R2)	☐	☐	☐	☐
3*	선장, 해기사 및 무선통신사는 해기사면허가 인정된 것을 증명하는 유효한 배서 또는 그 신청을 입증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가? (01214 01215 - STCW/CI/R2.7)	☐	☐	☐	☐
4*	선원들은 관련 적임증명서(COP) 또는 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있는가? (가이드라인 참조 바람)	☐	☐	☐	☐
5*	승선 중인 선원이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소지하고 있는가? (01218 - STCW/CI/R9)	☐	☐	☐	☐
6	휴식시간 기록은 요구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01308 - STCWC/PA/VIII/1)	☐	☐	☐	
7	당직 계획표가 STCW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01306 - STCWC/PA/VIII/1.5, STCWC/PA/VIII/2)	☐	☐	☐	
8*	신규승선자는 일상 또는 비상 시 개인의 구체적 임무를 숙지하고 있는가? (04121 - STCWC/PA/CI/14)	☐	☐	☐	☐
9*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이 선박의 통용언어(Working language)를 사용하여 서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 (10136 - STCW/CI/R14)	☐	☐	☐	☐
10	항해계획이 출항지에서 도착지까지 모든 항로를 포함하고 있는가? (10127 - STCWC/PA/VIII/2)	☐	☐	☐	

■ 참조

* 별표 한 개(*)로 표시된 질의(1~5번, 8~9번) : 질의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출항정지 가능

질문 1*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의 수는 해당 선박의 최소승무정원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점검항목	○ 선박에 유효한 최소승무정원증서(MSMD)를 비치하고 있는지 ○ 선원의 수와 자격이 최소승무정원증서(MSMD) 요건을 충족하는지
참고사항	- 유효한 최소승무정원증서(MSMD) 원본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이 선박에 비치되어야 함 - 최소승무정원증서(MSMD)의 유효기간은 강제사항이 아님 - 최소승무정원 증서상의 등급/직무별 면허종류 및 인원수와 부가적 자격 증명(의료관리자, 응급처치담당자,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자, 구명정 조종사, 여객 안전관리선원 등)이 최소승무정원증서(MSMD)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국이 선박 총톤수에 따라 최소승무정원증서(MSMD)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승선 중인 선원의 수가 예정된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적인 판단을 하게 됨 - 이전 항차에서 승선한 선원 수도 고려할 수 있음 - 기국의 요건 및 차항을 위한 승선 인원의 수가 충분한지 기국에 확인할 수 있음
관련규정 (Convention)	- STCW/CI/R4
결함 및 조치 코드 (Deficiency & Action taken Code)	- 01209(Manning specified by the minimum safe manning doc)
	- Code 17/30/55

질문 2* 선장 및 사관들은 최소승무정원증서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해기사면허(COC)를 소지하고 있는가?

점검항목	○ 적절한 양식의 유효한 해기사면허 및 그 배서를 소지하고 있는지 ○ 면허가 최소승무정원증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참고사항	- 배서는 발급 형식에 따라 협약에 명시된 양식이 적용되어야 함 - 증명서와 통합된 경우, STCW Code, Section A-I/2, Paragraph1 - 별도의 문서로 발행된 경우, STCW Code, Section A-I/2, Paragraph2 ※ 최소한의 필요정보가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증명서 및 배서 형식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영어로 기재 또는 영어 번역이 포함되어야 함 - 최소승무정원증서상의 선장 및 사관들의 해기사면허 요건에 해당 면허증(COC)의 직무, 기능 및 제한조건이 부합하여야 함 - PSCO는 증명서의 진위성 또는 유효성이 의심되는 경우, QR Code, 증서 발행국에 의해 IMO로 전송된 전자메일, IMO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증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음 - 전자해도(ECDIS) 훈련과 부원 등의 자격증명서와 관련된 사항이 확인될 수 있음 - 승인된 전자해도(ECDIS) 훈련사항 미완료 시 증서상 제한사항의 포함 여부 - 부원 등*의 자격증명서 확인은 기국에서 발행된 최소승무정원증서(MSMD)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에 따라 배치된 인원내 한함 * 갑판부원, 기관부원, 전기사(Electro-technical officers), 전기부원(Electro-technical ratings) - PSCO는 IMO회원국 및 준회원국으로부터 발행된 COVID-19 관련 회람 문서 목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선박에서 제시하는 기국에서 발행된 유효한 문서도 고려할 수 있음
관련규정 (Convention)	- STCW/CI/R2 - STCW Circular STCW.7/Circ.24/Rev.1
결함 및 조치 코드 (Deficiency & Action taken Code)	- 01201(Certificates for master and officers) - 01203(Certificates for radio personnel)
	- Code 17/30

질문 3' 선장, 해기사 및 무선통신사는 해기사면허가 인정된 것을 증명하는 유효한 배서 또는 그 신청을 입증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가?

점검항목	○ 해기사면허가 인정된 것을 증명하는 유효한 원본 배서를 소지하고 있는지 ○ 배서와 원본 해기사면허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 배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을 입증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지
참고사항	1. 선장, 해기사 및 무선통신사의 해기사면허(COC)가 기국이 아닌 다른 당사국에서 발급된 경우 - IMO MSC.1/circular 1163에 포함된 당사국이 아닌 주관청에서 증명서가 인정된 것을 증명하는 배서를 발급한 경우,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으로 간주하고 상세점검이 시행될 수 있음 2. 발행된 배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하이며, 배서는 원 면허증이 만료되거나 일시 중단, 취소 또는 철회되는 즉시 만료되어야 함 3. 해기사면허(COC) 및 배서의 갱신신청이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면허 및 배서의 유효기간(또는 그 유효기간 연장일)의 5번째 연차일까지 갱신될 수 있음 - 이 경우, 증명서 만료일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5년 6개월까지 발생할 수 있음 4. 기국 주관청에 의해 선장, 해기사 또는 무선통신사가 인정 배서 없이 선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이 경우, 유효한 해기사면허(COC)와 그 증서의 인정 배서 신청을 증빙하는 문서를 소지하여야 함 5. 선원이 완화증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완화증서의 조건은 협약 제8조에 따라야 함
관련규정 (Convention)	- STCW/CI/R2.7 - STCW Code Part B-I/11 - STCW Conv. Article VIII
결함 및 조치 코드 (Deficiency & Action taken Code)	- 01214(Endorsement by flag State) - 01215(Application for endorsement by flag State)
	- Code 17/30

질문 4* 선원들은 관련 책임증명서(COP) 또는 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있는가?

점검항목	○ 직위와 선종에 맞는 책임증명서(COP) 또는 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있는지 ○ 책임증명서(COP) 또는 증명서류가 적절히 갱신 또는 배서되었는지
참고사항	1. 승선원에 대한 교육 요구 사항(모든 선박) - 승선 중인 선원은 STCW Code Part B-I/2, 표 B-I/2*에 따른 해당 훈련 인증서 또는 증명서류를 보유해야 함 2. 승선원에 대한 특별교육 요구 사항(탱커) - 유조선에서 근무하는 선원은 STCW Code Part B-I/2, 표 B-I/2에 따른 해당 훈련 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3. 승선원에 대한 특별교육 요구 사항(여객선) - 여객선에서 근무하는 선원은 STCW Code Part B-I/2, 표 B-I/2에 따른 해당 훈련 증명서류를 보유해야 함 4. 승선원에 대한 특별교육 요구 사항(IGF Code에 따른 선박) - IGF Code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복무하는 선원들은 STCW Code Part B-I/2, 표 B-I/2에 따른 해당 훈련 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5. 승선원에 대한 특별훈련 요건(극지 수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 극지 수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선장, 갑판 사관은 STCW Code Part B-I/2, 표 B-I/2에 따른 해당 훈련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본 설명서 별표도 참고 가능
관련규정 (Convention)	- Refer to STCW Code Part B Table B-1/2
결함 및 조치 코드 (Deficiency & Action taken Code)	- Refer to deficiency base code 012 - Code 17/30

질문 5* 승선 중인 선원이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소지하고 있는가?

점검항목	○ 건강진단서가 유효한지, 만약 만료된 경우 협약요건을 준수하는지 ○ 건강진단서가 적절하게 서명되었는지
참고사항	1. 건강진단서는 다음 사항에 따르는 것이어야 함 - 선원이 직무와 일치하는 건강진단서의 소지 여부 (예: 갑판사관, 기관사관, 견시원) - 건강진단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 - 건강진단서의 경우 최대 유효기간 2년 - 18세 미만의 선원들에 대한 건강진단서의 경우 최대 유효기간 1년 - 진단서 내 색각 검사의 경우 최대 유효기간 6년 - 선원과 의료인에 의해 서명된 건강진단서인지 여부 2.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이 항해 중 만료되는 경우, 해당 진단서는 당사국*이 인정한 의료인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다음 기항지까지 유효함 - 단,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STCW 협약 당사국 아닌 기국에서 지정 또는 승인한 의료인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개별 선원의 신체적 제약을 고려하여 제한사항에 상충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지 여부가 검증될 수 있음 - 작업 일정 및 선원과의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확인
관련규정 (Convention)	- STCW CI/R9
결함 및 조치 코드 (Deficiency & Action taken Code)	- 01218(Medical certificate) - Code 17/30

질문 6 휴식시간 기록은 요구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점검항목	○ 휴식 기록이 적절한 서식에 기록, 서명되고 선원에 제공되었는지 ○ 추가작업 또는 훈련 등이 기록에 반영되고 허위 작성되지 않았는지 ○ 협약의 휴식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참고사항	1. 휴식 기록은 IMO/ILO의 관련 지침에 따른 표준화된 형식에 따라야 하며, 선박의 통용언어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2. 휴식 기록은 선장(또는 선장으로부터 권한을 승인받은 자)과 해당 선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각 선원은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함 - 휴식 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될 경우, 선원들은 해당 컴퓨터 기반 소프트웨어에 쉽게 접근 가능하여야 함 - 휴식 기록은 선원이 보관 중인 사본과 일치하여야 함 3. 선내 일지(갑판일지, 기관일지, GMDSS 무선일지, 훈련 기록, 기름기록부 등)에 기록된 추가 작업 또는 훈련이 근로시간으로 올바르게 표시되어야 함 4. 비상 또는 그 밖의 우선되는 운항 조건인 경우를 제외하고, 선원의 휴식 시간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임의의 24시간 동안 최소 10시간의 휴식 2) 임의의 7일 동안 최소 77시간의 휴식 3) 훈련, 계획되지 않은 작업(무인기관실 운항 시 휴식시간 중 작업 호출 등) 또는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선원의 정상적인 휴식 시간이 방해되었다면, 적당한 보상휴식을 제공하여야 함 4) 최소휴식시간은 임의의 24시간 동안 한 차례만 분할 가능 - 분할된 휴식 기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함 - 연속적인 휴식 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5. 기국은 상기 제4항의 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 가능하나 임의의 7일 동안의 휴식 시간은 70시간보다 적어서는 안 됨 1) 제4항의 제2호(임의의 7일 동안 77시간의 휴식) 완화 - 계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완화가 적용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경과 후 계속하여 휴식 시간의 완화 적용 가능 2) 제4항의 제4호(휴식 시간 분할) 완화 - 24시간 내의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두 차례로 분할할 경우, 그중 1회는 연속하여 최소한 6시간 이상, 다른 휴식 시간들도 각 1시간 이상이어야 함 - 상기와 같은 상황은 임의의 1주간에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관련규정 (Convention)	- STCW/PA/VIII/1		
결함코드 (Deficiency Code)	- 01308(Records of rest)	조치 코드 (Action Code)	- Code 17

질문 7 당직 계획표가 STCW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점검항목	○ 당직 계획표가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게시되어 있는지 ○ 적절한 양식 및 언어로 작성되고 최신화되었는지 ○ 당직 근무자가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참고사항	1. 당직 계획표는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게시되어야 함 2. IMO/ILO의 ‘선원의 선상 작업배치표 및 선원의 근로 또는 휴식시간표 작성을 위한 지침’에 따른 표준화된 형식에 따라 통용언어(Working language) 또는 선내언어(Languages of the ship)와 영어로 수립되어야 함 3. 선원 교대 등을 반영하여 당직 계획표가 최신화되어야 함 4. 당직 계획표가 일상 업무로 배정되었는지 - 당직자는 당직임무를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과업 또는 임무를 할당받거나 수행하여서는 안 됨 5. 당직 계획표에 지정된 당직 근무자는 당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6. 엔진 출력이 3000kW 이상인 선박에서는 기관사가 항구에 접안되어있는 동안 기관 당직 혹은 UMS 당직을 수행하여야 함
관련규정 (Convention)	- STCWC/PA/VIII/1.5, STCWC/PA/VIII/2 para 95
결함 및 조치 코드 (Deficiency & Action taken Code)	- 01306(Schedules for watchkeeping personnel) - Code 17

질문 8* 신규승선자는 일상 또는 비상 시 개인의 구체적 임무를 숙지하고 있는가?

점검항목	○ 회사가 신규승선자를 위한 친숙화 지침을 제공하였는지 ○ 선장은 신규승선자에게 적절한 친숙화 교육을 시행하였는지 ○ 선원은 선박특성을 포함한 자신의 일상 및 비상임무를 숙지하고 있는지
참고사항	1. 회사는 새로 고용된 선원들이 직무에 할당되기 전에 선상 장비, 운영 절차 및 그들의 직무에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기타 준비에 익숙해지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절차를 명시하는 서면 지침을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2. 신규로 고용된 각 선원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필수 정보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식이 풍부한 선원이 지명되어야 함 3. 신규승선자들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선박 전용 설비, 당직, 안전, 환경 보호, 보안 및 비상 절차에 대해 숙지하여야 함 - 자신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숙지도에 신속히 도달하지 못한 선원은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감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선원에게 알려야 함 4. 선장은 신규승선자가 자신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선내의 장치, 운전절차 및 기타 배치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경우 적절한 감독기간을 두어야 함
관련규정 (Convention)	- STCWC/PA/CI/14
결함 및 조치 코드 (Deficiency & Action taken Code)	- 04121(Crew familiarization with emergency systems) - Code 17/30

질문 9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이 선박의 통용언어(Working language)를 사용하여 서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

점검항목	○ 선박의 통용언어가 지정되고 로그북에 그 언어가 기록되었는지 ○ 현장에서 선원 간 통용언어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참고사항	1. STCW 협약 제I/14 규칙에서는 개정된 1974년 SOLAS 협약 및 그 개정 규정 제5장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박에서 항상 효과적으로 구두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2. 모든 선박에는, 안전 문제에 있어서 선원들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용언어(Working language)가 지정되어야 하며 본선 로그북에 그 언어가 기록되어야 함 - 각 선원은 통용언어를 이해하여야 하고, 해당되는 선원의 경우 통용언어로 지시 및 지침을 하달하고 또한 보고할 수 있어야 함 - 회사 또는 선장 중 적절한 쪽이 통용언어를 결정하여야 함 3. PSCO는 기기의 기능시험이나 비상훈련을 실시할 경우, 관련된 선원들이 통용언어로 상호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확인함
관련규정 (Convention)	- STCW/CI/R14
결함 및 조치 코드 (Deficiency & Action taken Code)	- 10136(Establishment of working language onboard) - Code 17/30

질문 10 항해계획이 출항지에서 도착지까지 모든 항로를 포함하고 있는가?

점검항목	○ 항해계획에 필수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 수립된 계획에 따라 항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참고사항	1. 항해계획은 출발항 계류지로부터 도착항 계류지(요박지 또는 기타 해상구조물이 될 수도 있음)까지의 모든 항로를 포함하여야 함 2. 항해계획은 선박의 상태, 화물의 특성 및 승무정원을 고려해야 하고, 선장에 의해 승인되고 항해당직 사관들에게 확인되어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이행되어야 함 3. 항해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좁은 수로, 연안, 항만 수역 등 제한수역 항해 시의 선위측정 방법과 주기 - 해도 및 기타 항행 간행물 - 잠재적인 위험요소(예시, (S)ECA 및 밀집된 어장 출입) 4. 계획된 항로는 적절한 해도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ECDIS가 주요 항행 수단인 경우에는 항해계획 및 모니터링이 ECDIS로 이루어져야 함 5. 항해계획을 담당하는 상급 사관이 항해계획에 대한 수정사항을 표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6. 신규 임용된 항해 당직사관은 항해기기 및 ECDIS 사용 방법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함
관련규정 (Convention)	- STCW/PA/VIII/2
결함 및 조치 코드 (Deficiency & Action taken Code)	- 10127(Voyage or passage plan) - Code 17

가. Table 1 For Q 4.1 승선원에 대한 교육 요구 사항(모든 선박)

Title	관련 규정	선원에게 요구되는 훈련	증명서의 종류	갱신요구	증명서를 인정하는 배서	결함코드
항해 및 기관 당직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증명된 부원 Rating forming part of a navigational or engineering watch	STCW/ CII/R4, CII/R5 CIIIR4, CIIIR5	Watch keeping personnel (including rating as able seafarer deck/engine)	COP	NO	NO	01202 01224
전자기관부원 Electro-technical rating	STCW/ CIIIR7	Every electro-technical rating serving on a seagoing ship powered by main propulsion machinery of 750 kW propulsion power or more	COP	NO	NO	01224
안전친숙화 Safety Familiarization	STCW/ CVI/R1	All persons employed or engaged on board, other than passengers	Evidence	NO	NO	01213
기본훈련 Basic Training	STCW/ CVI/R1	All seafarers with designated safety or pollution prevention duties	COP	Yes/보수교육	NO	01213
생존정, 구조정 및 생존 구조정 Survival craft, rescue boats, Fast Rescue Boats	STCW/ CVI/R2.1 CVI/R2.2	Officers and crew specifically designated by the muster list	COP	Yes/보수교육	NO	01205 01211
상급소화훈련 Advanced Fire Fighting	STCW/ CVI/R3	Officers and crew designated to control fire-fighting operations	COP	Yes/보수교육	NO	01206
의료응급조치 Medical First Aid	STCW/ CVI/R4.1	Officers and crew designated to provide medical first aid on board ship	COP	NO	NO	01210
의료관리 Medical Care	STCW/ CVI/R4.2	Master and other personnel designated to take charge of medical care on board	COP	NO	NO	01212
선박보안책임자 증서 Ship Security Officer Certificate	STCW/ CVI/R5	SSO designated by Company	COP	NO	NO	01217
보안인식훈련 또는 보안훈련 Security awareness training or security training	STCW/ CVI/R6	Seafarers with designated security duties	COP	NO	NO	01223

나. Table 2 For Q 4.2 승선원에 대한 특별교육 요구 사항(탱커)

Title	관련 규정	훈련이 요구되는 선원	증명서의 종류	갱신요구	증명서를 인정하는 배서	결함코드
적임증명서 또는 유조선과 화학제품운반선 화물 작업에 관한 기본 훈련 배서 COP or endorsement in basic training for oil and chemical tankers cargo operations	STCW/ CV/R1-1	Officers and ratings assigned specific duties and responsibilities related to cargo or cargo equipment	COP	NO	NO	01204
적임증명서 또는 유조선 화물 작업에 관한 상급 훈련 배서 COP or endorsement in advanced training for oil tankers cargo operations	STCW/ CV/R1-1	Masters, officers and any person with immediate responsibility for loading, discharging, care in transit, handling of cargo, tank cleaning or other cargo-related operations on oil tankers	COP	YES	YES	01204 01214 01215
적임증명서 또는 화학제품운반선 화물 작업에 관한 상급 훈련 배서 COP or endorsement in advanced training for chemical tankers cargo operations	STCW/ CV/R1-1	Masters, officers and any person with immediate responsibility for loading, discharging, care in transit, handling of cargo, tank cleaning or other cargo-related operations on chemical tankers	COP	YES	YES	01204 01214 01215
액화가스운반선 화물 작업에 관한 기본 훈련 적임증명서 COP in basic training for liquefied gas tankers cargo operations	STCW/ CV/R1-2	Officers and ratings assigned specific duties and responsibilities related to cargo or cargo equipment	COP	NO	NO	01204
액화가스운반선 화물 작업에 관한 상급 훈련 적임증명서 COP in advanced training for liquefied gas cargo operations	STCW/ CV/R1-2	Masters, officers and any person with immediate responsibility for loading, discharging, care in transit, handling of cargo, tank cleaning or other cargo-related operations on liquefied gas tankers	COP	YES	YES	01204 01214 01215

다. Table 3 For Q 4.3 승선원에 대한 특별교육 요구 사항(여객선)

Title	관련 규정	훈련이 요구되는 선원	증명서의 종류	5년 이내 갱신	결함코드
안전훈련 Safety Training	STCW/ CV/R2.6	Personnel providing direct services to passengers in passenger spaces	Documentary evidence	Not required	01222
군중관리훈련 Training in crowd management	STCW/ CV/R2.7	Master, officers and other personnel designated to assist passengers in emergency situation	Documentary evidence	Required	01222

Title	관련 규정	훈련이 요구되는 선원	증명서의 종류	5년 이내 갱신	결함코드
위기관리와 인간행동에 관한 훈련 Training in crisis management and human behaviour	STCW/ CV/R2.8	Master, chief mate, chief engineer, second engineer and any person having responsibility for the safety of passengers in emergency situations	Documentary evidence	Required	01222
여객안전, 화물안전 및 선체 보전성에 관한 훈련 Training in passenger safety, cargo safety and hull integrity	STCW/ CV/R2.9	Master, chief mate, chief engineer, second engineer and every person assigned immediate responsibility for embarking and disembarking passengers, loading, discharging or securing cargo, or closing hull openings onboard ro-ro passenger ships	Documentary evidence	Required	01222

라. Table 4 For Q 4.4 승선원에 대한 특별교육 요구 사항(IGF Code에 따른 선박)

Title	관련 규정	훈련이 요구되는 선원	증명서의 종류	5년 이내 갱신	결함코드
IGF 적용선박에 승선하기 위한 기본훈련에 관한 적임증명서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basic training for service on ships subject to the IGF Code	STCW/CV/R3	Seafarers responsible for designated safety duties associated with the care, use or in emergency response to the fuel on board ships subject to the IGF Code	COP	Required	01216
IGF 적용선박에 승선하기 위한 상급훈련에 관한 적임증명서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advanced training for service on ships subject to the IGF Code	STCW/CV/R3	Masters, engineer officers and all personnel with immediate responsibility for the care and use of fuels and fuel systems on ships subject to the IGF Code	COP	Required	01216

마. Table 5 For Q 4.5 승선원에 대한 특별훈련 요건(극지 수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Title	관련 규정	훈련이 요구되는 선원	증명서의 종류	5년 이내 갱신	결함코드
극지운항선박에 승선하기 위한 기본훈련에 관한 적임증명서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basic training for service on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STCW/CV/R4	Masters, chief mates and officers in charge of a navigational watch	COP	Required STCW Reg I/11.4	01299
극지운항선박에 승선하기 위한 상급훈련에 관한 적임증명서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advanced training for service on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STCW/CV/R4	Masters and chief mates on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COP	Required STCW Reg I/11.4	01299